

정 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POSCO

정 관

제정 1968. 3. 6	개정 1968. 7.10	개정 1969. 2.20
개정 1969. 3.20	개정 1969. 6.16	개정 1970. 2. 7
개정 1971. 2. 6	개정 1971.11.23	개정 1972. 2. 4
개정 1972.11.29	개정 1973. 2.12	개정 1974. 2. 5
개정 1975. 2. 8	개정 1976. 2. 6	개정 1977. 2. 8
개정 1978. 2.25	개정 1979. 2.24	개정 1981. 2.28
개정 1982. 2.23	개정 1984. 2.18	개정 1985. 2. 5
개정 1986. 2.26	개정 1987. 3. 7	개정 1988. 2.27
개정 1989. 3.15	개정 1990. 3. 6	개정 1991. 3.14
개정 1992. 3. 7	개정 1992.10.13	개정 1993. 3. 8
개정 1994. 4.15	개정 1995. 3.15	개정 1996. 3.15
개정 1997. 3.14	개정 1998. 3.17	개정 1998. 8.20
개정 1999. 3.16	개정 2000. 3.17	개정 2001. 3.16
개정 2002. 3.15	개정 2003. 3.14	개정 2004. 3.12
개정 2006. 2.24	개정 2007. 2. 23	개정 2009. 2.27
개정 2010. 2.26	개정 2011. 2. 25	개정 2012.3.16
개정 2016. 3.11	개정 2018. 3. 9	개정 2019. 3. 15
개정 2021.3.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SCO 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및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주식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 시에 4 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령과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다만, 우선주 소유주주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전략적 제휴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본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생긴 실권주 및 신주 배정 시에 생긴 단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
- ④ 제 2 항 내지 제 3 항의 경우 외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일반공모증자 등)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제 10 조 제 2 항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사유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총액은 1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본 회사의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그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관계법령 및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의 2 (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식사무의 수수료)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및 주주가 재무제표 기타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전략적 제휴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조 3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7 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조 3천억원은 보

통주식으로, 7 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8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인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④ 주주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장 또는 부사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및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사내이사 중 사장, 부사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의장의 총회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회사의 합병계약 (소규모합병의 경우는 제외)
 6. 이사회가 회사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5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27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8인 이내, 사내이사는 5인 이내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28 조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로 집중투표를 적용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 ① 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CEO 후

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이사회는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그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한다.
- ③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의 2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는 제 45 조 제 1 항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한다.

제 29 조의 3 (사내이사 후보의 자격)

- ① 사내이사는 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기간 중 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될 수 없다.

제 30 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 후보는 제 45 조 제 1 항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 31 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한다.

② 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관계 법령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회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결정을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통괄하며, 모든 이사가 최근의 경영상태와 회사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간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다.

제 33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 참석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 35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의 보상)

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제 4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9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가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정기이사회를 소집할 때 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이사회 의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 조 (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요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이사회 의안)

이사회 의안은 각 이사가 제안한다. 각 이사가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회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이사회에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 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 (전문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ESG 위원회
2.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4. 재정위원회
5. 경영위원회
6. 감사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 6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 46 조 (비등기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의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

금 기준에 준한다.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다.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34 조 단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7 조 (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전말을 기록한 의사록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50 조 (감사위원회의 의결방법)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 41 조를 준용한다.

제 51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2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5. 영업보고서

② 감사위원회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

여야 한다.

제 54 조 (삭제)

제 55 조 (잉여금의 처분)

본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에 대한 배당금
4. 임원퇴직공로금
5. 임의적립금
6. 배당평균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6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은 위 결의를 한 날부터 20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7 조 (자기주식소각)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2021. 3. 12)

본 개정 정관은 제 53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 51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제 9 조, 제 9 조의 2, 제 13 조, 제 18 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9)

본 개정 정관은 제 50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1)

본 개정 정관은 제 4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부 칙 (2012. 3. 16)

본 개정 정관 중 제 27 조는 제 4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나머지 조항은 2012.4.15 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본 개정 정관은 제 4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

본 개정 정관은 제 4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7)

본 개정 정관은 제 4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본 개정 정관은 제 3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4)

본 개정 정관은 제 3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2)

본 개정 정관은 제 3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 3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 3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6)

본 개정 정관은 제 3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7)

본 개정 정관은 제 3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6)

본 개정 정관은 제 3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0)

본 개정 정관은 제 3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7)

본 개정 정관은 제 30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 2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 2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 2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15)

본 개정 정관은 제 2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8)

본 개정 정관은 제 2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13)

본 개정 정관은 제 2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7)

본 개정 정관은 제 2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14)

본 개정 정관은 제 2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6)

본 개정 정관은 제 2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본 개정 정관은 제 2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27)

본 개정 정관은 제 20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3. 7)

본 개정 정관은 제 1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26)

본 개정 정관은 제 1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2. 5)

본 개정 정관은 제 1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18)

본 개정 정관은 제 1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23)

본 개정 정관은 제 1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 28)

본 개정 정관은 제 1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2. 24)

본 개정 정관은 제 1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2. 25)

본 개정 정관은 제 10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 8)

본 개정 정관은 제 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2. 6)

본 개정 정관은 제 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2. 8)

본 개정 정관은 제 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2. 5)

본 개정 정관은 제 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2. 12)

본 개정 정관은 제 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11. 29)

본 개정 정관은 제 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4)

본 개정 정관은 제 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3)

본 개정 정관은 제 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2.6)

본 개정 정관은 제 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2.7)

본 개정 정관은 제 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6.16)

본 개정 정관은 제 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3.20)

본 개정 정관은 제 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2.20)

본 개정 정관은 제 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7. 10)

본 개정 정관은 제 1 기 사업연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3. 6)

본 정관은 1968 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